

2019년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안내

지적사항

번호	지 적 사 항
1	<p><input type="checkbox"/>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처리</p> <p>○ 「충북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업무 처리지침」 II. 공무국외여행 7항에 따라 국외여행 귀국 후 14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p> <p>- OO대학 교원 OO명은 공무국외여행 후 귀국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p>
2	<p><input type="checkbox"/> 공무외 국외여행 복무처리 미이행</p> <p>○ 「충북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업무 처리지침」 III. 공무 외 국외여행 4항에 따라 교원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복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p> <p>- OO대학 교원 OO명은 공무 외 국외여행(자율연수)을 실시함에 있어 KORUS 근무상황부에 복무(연가)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3	<p><input type="checkbox"/> 사전 겸직허가 불이행</p> <p>○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p> <p>- OO대학 교원 OO명은 2018. 3. 1.부터 2019. 10. 31.까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한 사실이 있음.</p>
4	<p><input type="checkbox"/> 연구년제 연구교수 결과물 미제출</p> <p>○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년 교수를 수행한 교원은 연구 기간 종료 후 1년(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p> <p>- OO대학 교원 OO명은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p>

번호	지 적 사 항
5	<p>□ 타교 출강 미신고</p> <p>○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타교로 출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개강 전까지 출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고 승인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p> <p>- OO대학 교원 OO은 2019. 3. 8.부터 2019. 6. 14.까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출장처리만을 통하여 부적절하게 출강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p>
6	<p>□ 결·보강 관리 부적정</p> <p>○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교원이 공무 또는 개인사정에 의한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장에게 대·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강된 교과목에 대한 대·보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p> <p>- OO대학 교원 OO명은 교과목에 대한 결강 및 보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전에 대학장에게 대·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무상황 처리 시 결·보강을 미처리하거나 날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부적절하게 결·보강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p>
7	<p>□ 출석관리 및 수업일수 미달자에 대한 관리 소홀</p> <p>○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교원은 매 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관리부에 등재하고, 매 학기 종료와 동시에 출석을 집계하여 출석이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F”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p> <p>- OO대학 교원 OO은 2019학년도 1학기에 ‘의료인문학세미나’ 과목의 출석 관리 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출석부 하단에 표기된 대로 결석시간 수만큼 “/”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O명 학생의 교과목 성적을 “F”급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p>
8	<p>□ 졸업논문 작성계획 등 졸업업무 관리 소홀</p> <p>○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르면 졸업논문을 제출하려고 하는 학생은 제1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p> <p>- OO대학 교원 OO명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에 이르기까지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와 지도교수 배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고 논문을 지도한 사실이 있음.</p>

번호	지 적 사 항
9	<p>□ 졸업시험 출제 및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대학교 학칙」 제85조 및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40조에 따르면 외국어시험은 전공 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영어 및 제2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며, 과정별·계열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 OO대학 교원 OO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2019학년도 2학기의 1번, 3번, 4번 문제를 이미 2019학년도 1학기의 1번, 3번, 4번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로 재출제하였고, 나머지 2번 문제는 2018학년도 1학기의 4번 문제 및 2018학년도 2학기의 1번 문제로 이미 출제했던 문제를 OO대학의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문제로 재출제하는 등 외국어시험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10조에 따르면 종합시험의 과목·범위·출제방법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학과(부)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부)장이 정하여야 하고, 대학장은 학과별 종합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등 종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시험 1개월 전까지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OO대학 교원 OO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졸업 종합시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과목 등 졸업종합시험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졸업 종합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도 충북대 등 전국 8개 OO대학 컨소시엄 주관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연간 총 6회 실시)에서 이미 출제된 문제를 다시 충북대 OO대학 졸업 종합시험문제로 재출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문제 출제 및 관리를 한 사실이 있음.
10	<p>□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절차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조기 취업자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 OO대학 교원 OO명은 조기취업자에 대하여 출석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간 전에 승인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미출석 이후에 소급하여 승인처리 한 사실이 있음.

번호	지 적 사 항
11	<p>□ 장학생 선발 및 운영지침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지정기부금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특정한 수혜범위 제한 금지 등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OO대학 장학생 선발 및 운영 지침」 8번의 기타사항 마항 1호의 “외부장학금 기부자가 특정 학생을 지정한 경우 장학금 이중지급이 가능하다”의 조항은 장학생 선발 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특정 대상을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장학금 특혜의 논란이 될 수 있고, 현 사회적 현실에서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정한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12	<p>□ 봉사장학생 및 교육·연구보조원 근무상황 관리감독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대학교 등록금지원 장학금 관리지침」 제8조(봉사장학생 선발·운영 방법) 및 「충북대학교 교육·연구보조원 운영 세부지침」 제7조(근무 관리)에 따르면, 봉사장학생 및 교육·연구보조원을 관리하는 각 대학 및 부서(기관)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 OO대학 교원 OO명은 봉사장학생 및 교육·연구보조원의 근무상황부가 정확히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p>* 근무시간 오기, 근무 시작 종료시간 미기재, 주 최대 근무시간 초과운영</p>
13	<p>□ 여비 정산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제9조 및 제16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출장비 중 일비는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는 근무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OO대학 교원 O명은 일비 항목에 속해야 할 현지 교통비를 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근무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총 4건 합계 57,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14	<p>□ 물품운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운용관은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번호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대학은 운용하는 노트북컴퓨터 3대(취득원가 4,432,940원)가 분실되었는데도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5	<p>□ 물품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관리법」 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품관리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8조의1에 따르면, 보유한 물품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고 발행한 전자태그를 보유물품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OO대학에서는 감사 대상기간(2016. 12. ~ 2019. 10.)에 발행된 전자태그를 물품에 부착하지 않고 창고에 일괄 보관하는 등 기자재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온 사실이 있음.
16	<p>□ 수강생 워크숍 버스 임차시 증빙서류 미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재무관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을 위한 서류로써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고,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출관은 지출 전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확인해야 함에도, - OO에서는 2019. 1. 3.자 ‘워크숍 버스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 버스의 차량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계약함.
17	<p>□ 계약체결에 따른 인지세 미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제8조(납부),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는 인지세를 첨부(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2만원을 납부하거나 인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OO에서는 OO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각 2만원)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번호	지 적 사 항
18	<p><input type="checkbox"/> 예산집행과목 적용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는 세출 예산 중 '운영비(목)' 내 '임차료(세목)'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 OO에서는 2019. 1. 3.자 '워크숍 버스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버스 임차료 1,540,000원에 대한 예산 과목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19	<p><input type="checkbox"/> 수강료 수입금 수납 지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지체 없이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 OO에서는 일반과정 학습비 또는 보수교육 학습비 등의 수입금을 건별로 각각 최초 납부일 기준으로 9일 이상 최대 36일 간 지체하여 수납하지 않음. ※ '19. 7. 10.부터 주 1회 이상 세입 처리
20	<p><input type="checkbox"/>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2018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 받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OO대학은 2018학년도 대학회계 '제73회 식목행사 경비 집행'(결의서 번호 9호)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21	<p><input type="checkbox"/>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미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 제5항에 따르면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등재·관리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과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함에도, - OO대학은 감사대상기간(2016. 12. 1. ~ 2019. 10. 31.) 동안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및 점검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정보보안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OO대학은 감사대상기간(2016. 12. 1. ~ 2019. 10. 31.) 중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함으로써 정보보안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번호	지 적 사 항
	<p>- OO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5. 11. 1. ~ 2019. 10. 31.) 중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불용 및 반출입대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는 있으나, 실제 점검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정보보안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p>
22	<p><input type="checkbox"/> 보안점검 시행 소홀</p> <p>○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항에 따르면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 6. 1.부터 전자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p> <p>- OO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9. 6. 1. ~ 2019. 10. 31.) 중 최종 퇴청 전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안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9. 6월(1건), 7월(1건), 9월(2건), 10월(2건)</p>
23	<p><input type="checkbox"/> 일상감사 대상업무 감사 미의뢰</p> <p>○ 「충북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제4조(대상업무)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1건당 총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재산 취득·처분 포함) 시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전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p> <p>- OO대학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6. 12. 1. ~ 2019. 10. 31.) 중 1건당 계약금액 총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총 OO건의 용역 계약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p>
24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포함 문서관리 소홀</p> <p>○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6항 및 「충북대학교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p> <p>- OO대학 학과 사무실 등 6개 사무실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문서철을 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가 없는 장소에 방치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음.</p>
25	<p><input type="checkbox"/> 보안교육 실시 소홀</p> <p>○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p>

번호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7. 1. 1. ~ 2019. 10. 31.) 동안 신규 임용직원 O명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생활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6	<p><input type="checkbox"/> 정보보안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및 충북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에 따르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OO에서는 2017. 1월부터 2019. 11월 중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사이버보안진단을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7	<p><input type="checkbox"/> 제한구역 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제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 OO에서는 감사대상기간(2016. 12. 1. ~ 2019. 10. 31.) 동안 문서실 및 CCTV실에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비인가자에 대한 통제와 보안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8	<p><input type="checkbox"/> 유연근무제 신청자 복무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혁신처 예규」 제54조 및 2019년 충북대학교 근무혁신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시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코러스 시스템을 통하여 출·퇴근 처리하여야 하나, - OO대학 직원 OO명은 감사대상기간 동안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출근 및 야간 퇴근 시 출퇴근을 미처리한 사실이 있음.
29	<p><input type="checkbox"/> 자녀돌봄휴가 증빙서류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 의거 공무원이 자녀돌봄휴가(특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나, - OO 직원 O명이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승인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음.

번호	지 적 사 항
30	<p>□ 방화시설 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행위 및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 OO대학 건물의 방화시설(옥내소화전)에 책상 등 장애물을 적치 및 적재함으로써,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준 사실이 있음.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대피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대피시설 관리의 관계인은 대피시설을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 OO대학 건물의 민방위 대피시설(계단)에 책상, 의자 등 장애물을 적치 및 적재함으로써, 대피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준 사실이 있음.
31	<p>□ 시설공간관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대학교 시설공간관리 규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시설공간 관리주체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간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주체가 퇴직한 경우에는 반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공간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OO대학은 2018. 6. 11.자로 해임된 교수 0명의 퇴직교원이 사용하던 연구실을 감사일 현재까지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2	<p>□ 대학시설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대학교 시설공간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건물 내 공간분리가 수반되는 공사를 추진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 OO대학은 2층 여학생 휴게실 등 5건의 건물 사용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간분리를 하였으며 실 분리에 따른 소방감지기 등도 설치하지 않았음.
33	<p>□ 2019년도 소방계획 미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업무를 위하여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검토 후 반영하여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 OO에서는 2019년도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소방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번호	지 적 사 항
34	<p>□ 안전점검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대학교 시설공간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점유 및 사용권한을 관리주체에게 위임하여 그 공간을 관리하게 하였고, 대학본부 시설과에서 2019년 4월 및 6월, 2차례에 걸쳐 급작스런 호우 및 태풍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옥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도록 권고했음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대학은 태풍에 의한 물건 낙하위험이 있음에도 옥상에 의자를 방치하고 청소를 미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우리대학은 매년 '재난 및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과대학에서도 월 점검 및 정기점검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대학 1호관 및 2호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내외부의 균열 및 낙하위험 등이 발견되었음에도, 2017~2019년 제출한 점검표에는 모든 항목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음. - OO대학은 내부 구조체의 균열 및 외벽의 벽돌조 전도위험, 복도폭 미확보, 방화문 파손 등이 확인됨에도 성실히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우리대학은 매년 '재난 및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학교 및 부속기관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속기관에서는 월별 안전점검 및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 및 안전점검 기초조사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에서는 월별 안전점검 및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정기점검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표 4건('16. 1월, '17. 12월, '18. 7월, '19. 1월) 및 안전점검 기초조사서 3건('18년 여름철, '19년 해빙기, '19년 여름철)을 제출하지 않음.
35	<p>□ 공사 이행사항 검사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준공신고서 등 서면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대학은 교수연구실 등 세면대 설치 공사 시 이행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번호	지 적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대학은 OO대학 1호관 2층 “여학생휴게실 설치공사” (주)OO과 계약체결 (‘17. 2. 9.)한 공사에 대하여 이행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36	<p><input type="checkbox"/> 미협의 착공 등 건축업무 처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OO대학은 2016년 6월 OO대학 1호관 뒤편에 지어진 OO실(약16㎡)이 건축 협의 대상임에도 관할청과 협의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건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우수 사례

- [국제교류본부] 2주기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으로 대학 이미지 제고
 - 인증제 개요
 - 교육국제화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을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도모
 - 추진성과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계속 선정('13. 3.~'20. 2.)
 -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한국 체류 2년 가능 비자 취득
 - 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계속 선정

- [학생생활관] 생활관비 카드수납 및 분할납부 제도 시행
 -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활관비 카드수납 및 분할납부 제도 시행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3개사 카드 납부 가능(농협NH, 삼성, 현대)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2회 분할 납부 가능